



에너지부문 재정정책 효율화 방향¹⁾

박 광 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spark@keei.re.kr)

1. 서론

경제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함에 따라 한국의 에너지 소비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1981년 45.7백만 toe이었던 총에너지 소비는 2000년에는 192.9백만 toe로 증가하여 총에너지 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7.9%나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산업구조도 과거에 비해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에너지 소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서 2010년 기간 중 총에너지 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3.2%로 낮아졌고 2010~2016년 기간에는 1.9%까지 하락하였다.

에너지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부문의 재정사업도 새로운 사업이 도입되는 등 범위가 확장되고 규모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0년까지 증가하던 재정사업에 대한 지출은 2010년 이후 점차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업비는 4조 원 정도로 추정되어 적지 않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에너지 부문의 재정 체계를 보면 특별회계(예특회계)와 기금으로 구성되어 일반회계와는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체계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2001년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 에너지 부문 재정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재정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업에 대한 중복 투자, 성과가 불투명한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한 손실의 발생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왔지만 에너지 부문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에너지 부문의 재정운용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재정은 물론 에너지 정책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서론에 이어 다음 절에서는 에너지 부문 재정사업 현황을 예특회계와 전력기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3절에서는 에너지 재정사업의 향후 개선 방향

1) 본고는 박광수, 에너지부문 재정정책 효율화 방향, 에너지경제연구원(2017)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임.



에 대해 세입 및 세출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결론에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에너지부문 재정사업 현황

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의 설치 목적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²⁾ 에특회계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던 에너지 및 자원 관련 6개 기금을 통합하여 발족되었다.

1995년 1월에 석유사업기금, 석탄산업육성기금, 석탄산업안정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해외광물개발기금 등 5개 기금을 통합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였고, 1997년 1월에는 가스안전관리기금까지 흡수·통합하였다.³⁾

에특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투자계정과 용자계정으로 구분된다. 투자계정의 세입과 세출 그리고 용자계정의 세입과 세출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와 제6조(용자계정의 세입·세출)에 규정되어 있다. <표 1>은 2010년 이후 에특회계 세입과 세출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2010년 이후 에특회계의 세입 규모를 보면 연간 4~5

<표 1> 에특회계 세입/세출 추이

(단위: 억 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입	50,012	51,684	50,463	57,798	45,152	55,183	49,207
투자계정	36,083	31,626	31,358	38,241	31,737	41,423	37,331
용자계정	13,929	20,058	19,104	19,557	13,415	13,760	11,876
세출	43,821	39,657	40,256	54,985	42,491	53,304	47,583
투자계정	32,203	26,533	28,454	36,438	29,381	40,994	35,776
용자계정	11,618	13,124	11,802	18,547	13,111	12,310	11,807

자료: 한국석유공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실적 현황, 2017.4

조 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 5조7,798억 원으로 최대를 기록한 후 에특회계 세입은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2016년에는 4조9,207억 원을 기록하였다. 세입을 투자계정과 용자계정으로 구분하여 보면 투자계정은 3조

원과 4조 원 사이에서 변동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용자계정은 2013년 1조9,557억 원에서 2014년 이후에는 크게 축소되어 2016년은 1조1,896억 원까지 감소하였다. 투자계정 세입 중 일반회계(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의 전입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최성호 외 2인, 에너지원별 자원배분의 현황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p.53, 2014.7



은 2014년 이후 중지되었다.⁴⁾ 에특회계 세출 역시 2013년 5조4,985억 원으로 최대를 보였고 2016년에는 4조 7,583억 원으로 나타났다. 용자계정 세출은 2013년 타계정으로의 전출금이 급증함에 따라 1조8,547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1조1천억 원에서 1

조3천억 원 수준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에특회계 세입은 연간 5조 내외의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음을 보았다. 이제 에특회계 세입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투자계정에 대해서 보기로 한다.

〈표 2〉 에특회계 투자계정 세입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I. 재산수입	7,683	485	59	307	685	139	207
1. 정부출자수입	709	416	41	260	599	93	159
2. 기타수입	6,974	70	19	47	85	46	47
II. 경상이전수입	21,029	21,485	21,984	22,604	20,305	20,621	19,477
1. 벌금및몰수금	0	0	0	-	0	1	0
2. 가산금	1	2	0	1	2	0	1
3. 법정부담금	20,724	20,867	21,474	21,937	19,570	20,022	19,087
4. 기타경상이전수입	303	616	509	667	733	597	659
III. 전년도이월금	1,186	3,881	5,093	2,904	1,803	2,356	429
IV. 정부내부수입및기타	6,178	5,759	4,192	12,163	8,390	18,089	16,786
투자계정계(산업부)	36,075	31,609	31,327	37,978	31,182	41,205	37,169
투자계정(타부처)	8	17	31	263	555	219	162
투자계정총계	36,083	31,626	31,358	38,241	31,737	41,423	37,331

자료: 한국석유공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실적 현황, 2017.4

투자계정 세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 정부 타부처 소관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세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다. 투자계정 세입은 2010년 3조6,083억 원에서 변동을 보이다 2015년에는 4조1,423억 원까지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는 3조7,169억 원으로 다시 축소되었다. 투자계정 세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

상이전수입으로 2010년 이후 2조 원대의 수준을 유지하다 2016년 1조9,477억 원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2016년 경상이전수입은 투자계정 총액의 52.2%를 차지하고 있다. 경상이전수입은 다시 벌금 및 몰수금, 가산금, 그리고 법정부담금으로 구분된다. 벌금 및 몰수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과 석유 및

4) 2007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으로 에특회계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전입하였으나 에특회계의 경우 세입이 세출을 크게 초과하므로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전입하는 것은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2014년1월1일부로 임의전입으로 변경되었다.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제44조~제49조에 근거하여 부과한다. 법정부담금은 석유수입부과금, 석유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광해방지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 수출입업자로부터 수입 석유 및 LNG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하여 부과한다.⁵⁾ 석유수입부과금 납부 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용, 발전사업용, 비축용 등 특정용도의 공급에 사용하는 경우는 환급 대상이 된다.⁶⁾ 현재 부과기준은 원유와 제품의 경우 리터당 16

원, LNG는 톤당 24,242 원이다. 석유수입부과금은 법정부담금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2010년 1조6,646억 원에서 2013년 1조8,028억 원까지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1조6,407억 원을 기록하였다.

석유판매부과금도 석유수입부과금과 동일한 목적으로 부과되는데 징수대상은 수송용 부탄과 고급휘발유이다. 비축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환급해준다. 현재 부과기준은 LPG(부탄)는 톤당 62,283 원이고 고급휘발유는 리터당 36 원이다.⁷⁾ 석유판매부과금은 2010년 2,802억 원까지 징수되었으나 이후 수송용 부탄에 대한 부과금

〈표 3〉 에트회계 법정부담금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법정부담금계	20,724	20,867	21,474	21,937	19,570	20,022	19,087
석유수입부과금	16,646	17,057	17,296	18,028	16,011	16,407	15,718
- 원유 및 제품	8,728	8,527	8,397	8,299	7,299	8,484	7,973
- LNG	7,919	8,530	8,899	9,730	8,712	7,923	7,744
석유판매부과금	2,802	2,527	2,779	2,520	2,406	2,405	2,221
- LPG[수송용부탄]	2,757	2,487	2,737	2,480	2,368	2,373	2,186
- 고급휘발유	44	40	42	40	38	31	36
안전관리부담금	1,184	1,165	1,320	1,286	1,137	1,151	1,090
- LNG	869	864	987	1,007	870	875	809
- LPG	315	301	332	279	267	276	282
광해방지부담금	93	118	80	103	17	60	58

자료: 한국석유공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실적 현황, 2017.4

5) 구체적으로 동법 제16조~제19조, 제37조, 동법시행령 제23조~제27조, 시행규칙 제23조~제26조에 근거하여 부과한다.

6) 발전사업용은 시행령 제27조제1항 8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천연가스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7) LPG(부탄)에 대한 부과금은 리터당으로 환산하면 36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 감소세를 보여 2016년에 2,221억 원이 징수되는데 그쳤다.

예특회계 투자계정 중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항목은 일반회계와 타계정 전입금, 예탁원금 회수, 예수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구성된다.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세입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2010년 6,178억 원에서 2012년 4,192억 원으로 축소된 후 2013년에는 1조2,163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1조8,089억 원, 2016에도 1조6,786억 원을 기록하였다. 2015년과 2016년에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세입이 크

게 증가한 것은 예탁원금 회수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결과이다.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에서의 전입인데 2014년 임의화에 따라 전입이 중단되었다.

예특회계 용자계정 세입은 투자계정과 달리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타부처소관 용자계정 세입을 포함한 용자계정 세입총액은 2011년에서 2014년까지 2조 원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다 2014년 이후에는 1조3천억 원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용자계정 세입의 대부분은 용자원금회수에 의해 설명

〈표 4〉 예특회계 용자계정 세입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I. 재산수입	1,936	6,837	1,428	1,242	901	729	565
II.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9,955	10,833	10,622	10,751	11,248	12,582	9,669
III. 전년도이월금	2,007	2,311	6,934	7,303	1,010	305	1,449
IV. 정부내부수입및기타	31	-	-	-	-	-	-
용자계정계(산입부)	13,928	19,980	18,985	19,296	13,159	13,616	11,684
용자계정(타부처)	0	78	120	261	256	143	193
용자계정총계	13,929	20,058	19,104	19,557	13,415	13,760	11,876

자료: 한국석유공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실적 현황, 2017.4

된다. 2016년 용자원금회수액은 9,669억 원으로 용자계정 세입 총액의 81.4%에 해당된다. 용자원금회수는 예특회계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예특회계 용자대상기관에 지원한 용자금의 원금을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용자원금회수액은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한 회수액이 가장 크고 다음이 한국석유공사로 나타나고 있

다.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용자원금회수액은 유전개발사업의 축소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한 용자원금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회수금이 5천억 원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집단에너지공급 회수금이 증가함에 따라 2015년에는 9,256억 원까지 증가하였다.

8) 예탁원금회수는 예특회계 여유분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한 원금의 예탁기간 만료에 따른 회수를 의미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한 원금은 여유자금 증가로 2013년 1조 원을 초과한 후 2015년은 1조9,820억 원, 2016년 1조5천억 원으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표 5〉 기관별 융자원금회수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석유공사	3,347	4,032	2,540	2,684	2,517	2,516	1,757
대한석탄공사	6	-	-	-	-	-	-
한국광물자원공사	365	295	276	628	369	423	722
한국가스안전공사	397	382	372	328	313	330	208
한국에너지공단	5,730	6,035	7,344	7,033	7,981	9,256	6,938
한국광해관리공단	109	89	90	76	69	58	44
융자원금회수계	9,955	10,833	10,622	10,751	11,248	12,582	9,669

자료: 한국석유공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실적 현황, 2017.4

나.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으로 과거 한국전력공사가 수행하던 공익기능을 정부에 이관하고,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설치되었다.⁹⁾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주요 역할에는 수요관리를 통한 합리적인 전기에너지 소비 유도, 도서벽지 전력공급, 전기안전관리 등 전기사용 기본생활권 보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수급 전략 지원 및 녹색성장 견인,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

표준화 등 전력산업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된다.¹⁰⁾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51조에 근거하여 전기요금 6.5%이내에서 부담금을 부과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도입 초기에는 3.23%(2001년)를 부과하였고 이후 4.591%(2002~2005년)로 인상한 후 3.7%(2006~현재)로 조정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 총액은 1조7,934억 원이었다. 그 가운데 법정부담금이 1조3,477억 원으로 수입의 75%를 차지하였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은 2011년

9) 전기사업 제48조(기금의 설치)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한다.

10)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7.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 9의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1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부터 2조 원대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3조 원을 초과하였다. 2016년에는 4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계획하였다. 2010년에서 2015년 기간 중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은 연평균 14.9%로 증가하였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 항목 중 가장 비중이 큰 법정부담금도 전력소비 증가 및 전기

요금 상승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정부담금은 2010년 1조3,477억 원에서 2015년에는 2조1,44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2조 2,670억 원으로 계획되었다. 법정부담금은 2010년에서 2015년 기간 동안 연평균 9.7%로 증가하였다.

〈표 6〉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 및 지출

(단위: 억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입계	17,934	20,996	22,980	24,851	30,828	35,986	41,972
자체수입	16,041	17,036	19,862	21,505	24,673	24,740	25,726
법정부담금	13,477	14,710	16,637	18,275	19,471	21,440	22,670
융자원금회수	1,081	1,166	1,435	1,229	1,065	579	456
기타	1,483	1,160	1,790	2,001	4,137	2,721	2,600
정부내부수입	91	746	82	139	180	2,271	3,960
기탁예금원금회수	50	700	-	-	-	2,000	3,500
기탁예금이자수입	41	46	82	139	180	271	460
차입금	-	-	-	-	-	-	-
여유자금회수	1,802	3,214	3,036	3,207	5,975	8,976	12,287
지출계	17,934	20,996	22,980	24,851	30,828	35,986	41,972
사업비	14,720	15,880	17,694	17,297	18,181	19,031	17,637
경상사업비	14,520	15,680	17,514	17,097	16,897	17,681	16,137
융자사업비	200	200	180	200	1,284	1,350	1,500
기금운영비	81	79	78	79	72	75	80
정부내부지출	-	2,000	2,000	1,500	3,600	9,000	9,000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
여유자금운용	3,133	3,036	3,207	5,975	8,976	7,880	15,256

주: 2015년까지는 실적이고 2016년은 계획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전력산업기반기금), 각년도

법정부담금에 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 총액이 더 빠르게 증가한 것은 사업비 지출이 법정부담금보다 완만하게 증가하여 여유자금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

문이다. 2010~2015년 기간 중 사업비는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연평균 5.3% 증가에 그쳐 자체수입 증가율(9.1%)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



과 2012년까지는 사업비 지출이 법정부담금보다 많았으나 2013년부터는 법정부담금이 사업비 지출을 초과하였다. 2013년 법정부담금은 1조8,275억 원이고 사업비 지출은 1조8,181억 원으로 법정부담금이 978억 원 많았다. 2015년에는 2,409억 원으로 차이가 더욱 확대되었고 2016년은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업비 지출이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수입은 빠르게 증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유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을 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 예탁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500억 원 수준이었던 정부 내부지출은 2014년 3,60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9,000억 원까지 증가하였다. 여유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외에 통화 및 비통화금융기관에도 예입·예치하는데 여유자금운용액을 보면 2012년까지 3천억 원대 수준에서 2013년에는 5,975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15년은 7,880억 원을 기록하였다. 2015년의 경우 7,880억 원 가운데 5,204억 원은 통화금융기관에 나머지는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에너지부문 재정 효율화 방향

재정의 기능은 자원배분(효율성), 소득분배(형평성), 그리고 경제 안정 및 성장(경기조절)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¹¹⁾ 2000년대 이전까지 에너지 부문의 재정 운용은 자원배분과 경제 안정 및 성장 기능에 집중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이 중요한 사업으로 포함됨에 따라 소득분배 기능도 중요하게 되었다. 이처럼 에너지 분야의 재정 기능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만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나 효과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에너지 부문 재정 활동 또는 재정 운용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보기로 한다.¹²⁾

가. 세입부문 개선방향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회계이다.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은 조세수입이 아닌 출연금·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특정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다. 이처럼 특별회계와 기금은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¹³⁾

현행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의 투자계정의 세입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¹⁴⁾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

11)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재정 2016, p.12, 2016.3

12) 재정활동은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활동으로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정부의 수입·지출활동을 의미한다.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재정 2016, p.12, 2016.3

13)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재정 2016, pp.18~19, 2016.3

14)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제1항



3.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8에 따른 과징금
4. 「광업법」 제87조에 따른 부과금 및 가산금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 부담금 및 가산금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가산금
7. 「한국석유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입금
8. 투자계정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9.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10. 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12. 제8조에 따른 차입금
 13. 용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외의 수입금
- 에특회계 용자계정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용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2.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3. 제7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5. 제8조에 따른 차입금
 6. 투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수입금
- 에특회계의 주요 세입 항목에 근거한 에너지원별/제품별 부과금과 부담금은 다음 <표 7>에 정리되어 있다.

<표 7> 에너지원별/제품별 부과금 기준

에너지원	석유			천연가스
단위	(원/liter)		(원/kg)	(원/kg)
유종	원유, 석유제품	부탄	프로판	
수입부과금	16	-	-	24.2
판매부과금	(36)	36.4	-	-
안전관리부담금	-	2.6	4.5	5.5
계	16(36)	39	4.5	29.7

주: 석유판매부과금은 고급휘발유에 대해 부과, 부탄의 판매부과금은 kg 기준으로는 62.3원

자료: 정준환 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효율적 운용에 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p.37, 2017.3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에특회계의 세입은 석유와 가스에 집중되어 있고 석탄이나 우라늄과 같은 다른 에너지원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원유와 석유제품 그리고 천연가스에는 수입부과금이 부과되는데 현재 석유에는 리터당 16원 그리고 천연가스에는 kg에 24.2원이 부과되고 있다. 수입부과금 외에 판매부과금과 안전관리부담금도 부과되고 있다.

에특회계 세출도 투자계정과 용자계정으로 구분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투자계정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출연금 등으로 구분되고 용자계정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용자 대상 기관에 대한 용자, 투자계정으로의 전출금, 용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등이



포함된다.¹⁵⁾ 투자계정 및 용자계정 사업을 에너지원별 및 사업특성에 따라 보면 석유, 가스, 석탄, 자원개발, 기술 개발 및 이용합리화, 에너지정책연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2015년 에특회계의 투자사업 중 석유관련 사업에 약 2,480억 원을, 가스관련 사업에 약 1,770억 원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석탄관련 사업에 약 4,350억 원을, 자원개발사업에 약 2,380억 원을, 기술개발 및 이용합리화 사업에 8,800억 원을 사용해 석유 및 가스관련 사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⁶⁾

앞서 보았듯이 에특회계의 세입 주요 항목과 세출 구성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세입과 세출 부문에서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세입이 특정 에너지원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세출은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즉 에너지원 측면에서 에특회계 세입의 불균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¹⁷⁾ 특히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연료의 경우 특정 에너지원(천연가스)에만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발전원간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점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발전원별 정산단가를 보면 유연탄발전의 정산단가가 가스발전의 정산단가보다 크게 낮는데 이는 천연가스에 보다 높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 외에 천연가스에만 수입

부과금이 부과되는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¹⁸⁾ 환경오염을 고려할 때 단위당 소비에서 유연탄이 천연가스보다 오염물질을 훨씬 많이 배출하는데 천연가스에 높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부과금도 부과되어 환경오염을 더 크게 유발하는 에너지원에 유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발전원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도 발전용 유연탄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⁹⁾

특정 세입 부과가 석유와 가스라는 에너지원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과금 금액 기준도 모호하다.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금액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20) 21)} 현재 부과되고 있는 금액은 석유가 리터당 16원 그리고 천연가스는 kg당 24.2원으로 열량을 기준으로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특회계의 설치 목적을 고려할 때 열량을 기준으로 수입부과금 금액을 설정한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금액의 크기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수입부과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 발전용 유연탄 등에 대해 수입부과금을 신설하고 금액을 어느 수준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1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제2항, 제6조(용자계정의 세입·세출)제2항

16) 정준환 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효율적 운용에 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pp.37~38, 2017.3

17) 정준환 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효율적 운용에 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pp.37~38, 2017.3

18) 현재 천연가스에는 kg당 6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발전용 유연탄에는 kg당 30원의 개별소비세(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킬로그램당 38원,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27원의 탄력세율을 적용)가 부과되고 있다.

19) 산업용 유연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의 경우처럼 수입부과금 부과를 유예하거나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제2항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 수입하는 석유 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 1리터당 36원(천연가스 및 석유가스의 경우에는 그 가스를 액화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1리터당 36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4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30, 2012.6.29, 2013.3.23, 2014.9.18>

1.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유: 리터당 16원

2.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제품: 리터당 16원

3.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천연가스: 톤당 24,242원

4.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급휘발유: 리터당 36원

5.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탄: 톤당 62,283원



대해서는 세입-세출 불균형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보기로 한다.

나. 세출 개선 방향

1) 장기 에너지계획과 세출의 연계

정부는 5년마다 에너지기본계획²²⁾을 수립하고 2년을 주기로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등

에너지원별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규모나 조달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 정부의 사업실행 의지에 대한 불신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고 목표 달성도 불투명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관리 목표를 들 수 있다. 다음의 두 표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관리 목표를 정리한 것이다. <표 8>은 최대전력 절감계획의 연도별 목표

<표 8> 최대전력 절감계획

(단위: MW)

연도	효율향상		스마트기기 및 요금제도	부하관리 및 정책의지	계
	기기보급	효율관리			
2015	249	22	298	203	772
2016	504	69	336	438	1,347
2017	764	122	450	672	2,008
2018	1,028	178	590	963	2,759
2019	1,289	239	765	1,313	3,606
2020	1,599	302	979	1,722	4,602
2021	1,906	368	1,243	2,143	5,660
2022	2,207	437	1,560	2,580	6,784
2023	2,500	508	1,926	3,030	7,964
2024	2,783	581	2,334	3,488	9,186
2025	3,103	658	2,761	3,949	10,471
2026	3,412	737	3,170	4,418	11,737
2027	3,706	811	3,548	4,901	12,966
2028	3,984	891	3,880	5,394	14,149
2029	4,246	1,011	4,144	5,899	15,3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5.7

22) 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표 9〉 전력소비량 절감계획

(단위: GWh)

연도	효율향상		스마트기기 및 요금제도	부하관리 및 정책의지	계
	기기보급	효율관리			
2015	1,012	498	6,397	498	8,405
2016	2,012	1,250	6,842	1,042	11,146
2017	3,101	2,023	7,424	1,640	14,188
2018	4,288	2,923	8,169	2,580	17,960
2019	5,575	3,880	9,109	3,880	22,444
2020	7,159	4,819	11,880	5,559	29,417
2021	8,801	5,797	15,053	7,326	36,977
2022	10,478	6,812	18,716	9,170	45,176
2023	12,135	7,862	22,896	11,087	53,980
2024	13,724	8,950	27,580	13,080	63,334
2025	15,405	10,080	32,711	15,085	73,281
2026	16,955	11,242	37,332	17,151	82,680
2027	18,390	12,438	41,858	19,283	91,969
2028	19,709	13,671	46,114	21,482	100,976
2029	20,925	14,939	49,613	23,749	109,22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5.7

이고 〈표 9〉는 연도별 전력소비량 절감 목표이다.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최대전력과 전력소비량 절감 목표치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전력소비량 절감계획을 보면 효율향상을 통한 절감 목표량은 2015년 1,510GWh에서 2016년 3,262GWh로

2배 이상 증가하고 2017년에는 5,124GWh, 2018년은 7,211GWh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표 10〉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설명자료에 나타난 효율향상 재정 소요액 계획을 보면 2017년 673억 원에서 2019년에는 662

〈표 10〉 효율향상 중기 재정소요

(단위: 억 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효율향상기기	317	433	433	422	419
부하관리기기	192	236	236	236	226
효율향상계	503	673	673	662	649

주: 효율향상계에는 기반건축사업 4억 원이 포함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전력산업기반기금), p.138, 2015.12



억 원으로 감소하고 2020년에는 649억 원으로 더욱 축소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2017년 효율향상사업 소요 예산을 추정하는데 이용한 세부내역을 보면 효율향상기기 사업 중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과 고효율 냉동기 사업에 59억 원이 투입되나 전력수요는 126MW를 절감하는데 그치고 부하관리기기사업에서 축냉설비사업은 58억 투자에 12.6MW를 줄이는데 그쳐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목표치와는 상당히 큰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효율향상 목표는 매년 크게 증가하는 반면 재정소요액 추계가 감소하는 것으로

설정된 이유는 중기 재정소요액을 추정할 때 적용한 절감목표량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목표와 다르기 때문이다. <표 11>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기 재정소요액을 추정하기 위해 적용한 전력효율향상 실적 및 목표이다.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하여 효율향상 목표가 크게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스마트기거나 부하관리 및 정책의지에 의한 절감 목표량을 훨씬 크게 설정하였지만 중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표 11〉 효율향상 성과 실적 및 목표

(단위: GWh)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에너지절감량	354.8	159.9	108.1	108.1	108.1	108.1

주: 2014년은 실적치이고 2015년부터 목표치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전력산업기반기금), p.163, 2015.12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필요한 재원의 규모나 조달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필요한 재원의 규모나 조달계획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수요관리 목표를 반영하여 장기 전원계획이 수립된다는 점이다. 전력 수요관리 이외에도 많은 계획이나 목표가 필요한 재원의 규모나 조달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 정부의 에너지 계획이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재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향후 정부가 장기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때 단기, 중

기, 장기 실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필요 재정소요액과 조달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목표는 필요한 예산을 조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정해야 할 것이다.

2)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개선

현재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는 크게 성과목표 관리제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그리고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도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다.²³⁾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2005년 도입되었다.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제1항과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재정

23) 박형수 외, 재정제도 및 재정운용 시스템의 개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12-15, p.183, 2012.12



사업의 성과평가)에 근거하여 기금관리 주체가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해당 부처의 자체평가에 의해 수행되어 개별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에는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심층평가제도가 2006년에 도입되었다.²⁴⁾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 역시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제1항과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재정사업의 성과평가)에 근거하고 있다.²⁵⁾

에너지부문의 재정사업과 관련된 자율평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고 있다. 자율평가는 해당 사업을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계획 및 사업관리의 적절성, 사업성과 및 환류단계에 걸쳐 11개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자율평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가 확인하고 점검하는 순서로 평가가 진행된다.²⁶⁾ 에너지부문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사업의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많은 사업에서 재정투자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보다 단순한 물량을 성과지표로 채택하고 있고 일부 사업은 그나마 단순한 성과지표마저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사업의 자율평가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지표의 사례를 보면 다음

과 같다.²⁷⁾

전력수요관리사업의 경우 성과지표는 두 가지인데 핵심지표는 전력수급 안정 기여율(%)로 수요조정을 통해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한 일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한다. 측정산식은 '전력수급 안정 기여율 = 수급안정 기여 일수(일) ÷ 수급 안정 조치 필요일수 × 100'이다. 핵심지표와 병행해서 사용되는 일반 성과지표는 고효율기기 보급을 통한 에너지 소비 절감량으로 측정산식은 다음과 같다. 소비절감량 = 고효율기기별 절감전력(kW) × 보급 목표수량 × 연간 평균사용시간. 전력수요관리사업 성과 측정을 위한 핵심지표와 일반지표 모두 양적 크기가 평가기준이고 재정투입의 효율성이나 경제성 등은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²⁸⁾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문제로 지적되는 또 다른 사례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국내의 유전개발 사업의 경우 에너지 및 자원의 자주개발 역량 확충을 성과 목표로 삼아 자주개발률을 성과지표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자주개발률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생산 및 개발단계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었다. 자원개발 사업은 단순히 자금만 투입하고 투자 광구의 지분만 확보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투자의 효율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특히 자금의 투입이 석유가격이 가장 높은 시기에 집중되어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투자 손실이 급증하는 문제를 초

24) 재정성과평가센터, <http://cpem.kipf.re.kr/cpem/cpeminfo04.aspx>(2017.9.12)

25)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 또는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26) 기획재정부, 2015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012~2014 회계년도 평가), p.3, 2015

27) 산업통상자원부, 2015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pp.591~592, 2015.6

28) 성과지표가 사업의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전력수요관리사업은 별도의 평가용역을 통해 성과 및 경제성을 분석하고 있다.



래하였다.²⁹⁾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축소하고 성과지표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표 1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해외 유전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는 2010년 1조2,556억 원까지 증가한 후 급격히 축소되어 2016년에는 500억 원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표 12〉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공기업 출자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유전개발사업출자(한국석유공사)	12,556	7,100	6,903	2,200	1,700	570	500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1,307	1,800	2,200	1,800	1,849	1,512	665
계	13,863	8,900	9,103	4,000	3,549	2,082	1,16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110, 2015.10

일부 사업은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한 가지 이유는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성과지표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성과지표 개발에 필요한 기초적인 통계가 구축되지 못한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경우 현재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2015년에 도입되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시행 기간이 짧다는 문제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없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의 경우 대부분 평가가 부재한 실정이며 일부 사업에서 평가를 진행하여도 성과지표로 지원 가구수와 같은 단순 양적 지표를 채택하는데 그쳐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원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 정도나 실제 에너지 소비 증가로 인한 복지향상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부문 사업의 재정운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가결과가 반영되어 사업 계획이 개선되고 사업효과가 제고되는 환류효과(feedback)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개선하고 재정사업 자율평가 항목의 개선, 평가대상 사업 선정방식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한 가지 방안은 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전문기구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평가에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별로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개별사업을 평가할 때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에너지 분야의 전반적인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에너지 분야의 사업 가운데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지닌 사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업의 성과평

29) 국회예산정책처는 유전개발사업의 경우 생산단가에 대규모 투자를 시행하였으나 회수율이 저조하여 공기업의 부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113, 2015.10



가 시에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않고 개별 사업을 독립적으로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해당 사업에만 반영하면 부분적인 효과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별 사업에 대한 분석은 물론 에너지 관련 사업 전체에 대해 체계적인 평가를 주관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새로운 기구를 조직하기 어렵다면 기존 연구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³⁰⁾ 에너지 분야의 재정사업 효율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 자율평가 사업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 사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함께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일단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먼저 포함하고 추후에 모든 예비타당성조사로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의 규모가 적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는 것도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³¹⁾

다. 세입-세출 불균형 개선방향

에특회계 세입은 등락을 보이고 있으나 5조 원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은 전력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에특회계 세출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은 최근 몇 년간 축소되면서 세입-세출 불균형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3〉은 2010년 이후 에특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정리한 것이다.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매년 세입이 세출을 초과하고 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세입이 세출을 1조 원 이상 초과하였다. 2013년부터는 초과세입이 크게 축소되고 2016년에는 1,624억 원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증가 등 여유자금 세출이 증가한데 따른 결과이므로 에특회계 세입/세출 불균형이 축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표 14〉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내용이다. 지출항목을 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인 정부내부지출이 2011년 2천억 원 수준에서 2016년에는 9천억 원 규모로 증가하였고, 통화·비통화금융기관에

30)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제1호 외의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

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나.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평가 또는 컨설팅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외의 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업무 수행 계획서

2. 출연금의 지급 방법과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업무 수행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6. 그 밖에 전문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1) 201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조(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제1항을 보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한다.



〈표 13〉 에트회계 세입 및 세출 비교

(단위: 억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입	50,012	51,684	50,463	57,798	45,152	55,183	49,207
세출	43,821	39,657	40,256	54,985	42,491	53,304	47,583
세입-세출	6,191	12,027	10,207	2,813	2,661	1,879	1,624
공자기금 순증가	0	0	600	11,500	9,400	7,020	5,331

자료: 정준환 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효율적 운용에 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p.43, 2017.3

예입·예치하는 자금인 여유자금운용액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에트회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도 초과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불균형이 확대되는

〈표 14〉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 및 지출

(단위: 억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입계	17,934	20,996	22,980	24,851	30,828	35,986	41,972
자체수입	16,041	17,036	19,862	21,505	24,673	24,740	25,726
법정부담금	13,477	14,710	16,637	18,275	19,471	21,440	22,670
융자금회수	1,081	1,166	1,435	1,229	1,065	579	456
기타	1,483	1,160	1,790	2,001	4,137	2,721	2,600
정부내부수입	91	746	82	139	180	2,271	3,960
여유자금회수	1,802	3,214	3,036	3,207	5,975	8,976	12,287
지출계	17,934	20,996	22,980	24,851	30,828	35,986	41,972
사업비	14,720	15,880	17,694	17,297	18,181	19,031	17,637
기금운영비	81	79	78	79	72	75	80
정부내부지출	-	2,000	2,000	1,500	3,600	9,000	9,000
여유자금운용	3,133	3,036	3,207	5,975	8,976	7,880	15,256

주: 2015년까지는 실적이고 2016년은 계획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전력산업기반기금), 각년도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에트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초과세입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은 세입 증가의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업에 대한 투자 축소에 기

인한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에트회계의 경우는 해외 유전개발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감소한데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세출은 2010년 1조2,556억 원에서 2013년에는 2,200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2016년에는 300억 원 수준까지 축소되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는 부하관리사업의 급감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부하관리사업 지출은 2012년 4,046억 원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급감하여 2016년에는 100억 원 미만으로 축소되었다.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을 조정해야 하는데 먼저 세출부문에 대해 보기로 하자. 에트회계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세출부문 개선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세출부문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세입 목적과 규모에 상응하는 세출항목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부문 정책수요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³²⁾ 이와 관련해서 에트회계의 경우 에너지 및 자원분야에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에너지 안전,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복지, 기술개발 투자,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대한 세출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거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에트회계 용자사업이 최근 저금리기조, 대기업 제외, 타 부처 용자사업과 중복, 용자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용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도개선 및 새로운 용자사업 발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³³⁾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도 신재생에너지보급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고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요금할인 사업 등 공익사업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입부문의 조정방안을 보기로 하자. 먼저 에트회계

세입 조정에 대해서 검토한다. 앞서 에트회계의 에너지 원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이나 우라늄에 대해 수입부과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현재 천연가스에 kg당 24.2원의 수입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두고 발전용 유연탄에 새로 수입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 열량을 기준으로 보면 kg당 10~12원 정도의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³⁴⁾ 다만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 현재 발전용 유연탄 수입량이 연간 8천만 톤 정도이므로 8천억 원에서 1조 원 정도의 수입이 추가된다. 현재 에트회계 세입이 세출을 초과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데 발전용 유연탄에 수입부과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 불균형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또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따라서 발전용 유연탄에 수입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 에너지원별 부과금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석유 수입부과금 수준을 고려할 때 세수를 중립으로 유지한다면 석유와 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40% 정도 인하할 필요가 있다. 즉 석유는 리터당 10원, LNG는 kg당 15원 정도로 부과금을 인하하고 발전용 유연탄에는 kg당 7~8원 정도의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유연탄 발전의 원가 상승으로 전기요금은 인상요인이 발생하지만 도시가스에는 가격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수입 조정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전력 소비가 다른 에너지원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규제로 전기요금 인상이 억제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유가 급등에 따라 대부분의 에너지 가격이 크

32) 정준환 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효율적 운용에 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p.56, 2017.3

33) 정준환 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효율적 운용에 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p.56, 2017.3

34) 산업부문 특히 철강업에서 소비하는 원료용 유연탄의 경우는 에너지보다는 환원제 용도로 투입되므로 수입부과금 부과를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게 상승하였지만 전기요금은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인상을 억제하여 상대가격 변화로 인한 전력으로의 에너지대체를 초래하였다. 2016년 전력소비량은 전년보다 2.8% 증가한 497.0 TWh를 기록하였다. 이를 열량으로 환산하면 42.7백만 TOE다. 그런데 이 만큼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에너지는 110.1백만 TOE이었다. 전력은 이처럼 투입된 에너지에 비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적은 매우 비효율적인 에너지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는 전기요금 인하와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므로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부담금 조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라. 기타 개선방향

에너지부문의 사업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기준의 재정립도 필요하다. 재정사업은 가능한 시장 실패가 발생한 경우나 민간이 주도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재정을 통해 지원한 사례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경우 발전사업자의 비용으로 해야 할 사업을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 전력산업홍보사업 가운데 원자력 홍보의 경우도 전력산업기반기금보다는 한수원 등 원전 사업자나 원전과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 홍보로 2017년 51억 원에서 2020년에는 62억 원의 사업비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으로 계획되고 있다.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는 사업자의 재원 투입을 유도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한 지원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정부가 전력수요관리로 DR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에트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이의 사업 조정도 필요하다. 일부 사업에서 중복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분석하면서 에트회계 예산으로 진행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홍보사업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전력홍보사업 사이에 차별성이 부족하여 유사 중복된 홍보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³⁵⁾ 에너지복지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에너지복지 사업은 정부는 물론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효율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을 보면 에트회계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사업, 이용효율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는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각 사업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종류의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어 중복지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타부처간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연료전지 등 12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추진하고 있고 미래창조과학부도 「기후변화 대응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태양전지와 연료전지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³⁶⁾ 산업통상

35)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112, 2016.10

36)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pp.103~106, 2015.10, 산업통상자원부의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지원분야는 12개가 아니고 14개로 나타나고 있다.



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위해 2016년도 예산안으로 전년대비 287억 원 감소한 1,863억 원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의 에너지원별 2016년도 예산안 비중은 태양전지 27.5%(515억 원) · 풍력 15.8%(295억 원) · 연료전지 14.0%(263억 원) 순이다.³⁷⁾ 미래창조과학부는 태양전지 분야의 경우 전년대비 123.5% 증가한 89억 원, 연료전지 분야는 185.5% 증가한 67억 원을 편성하였다. 부처간 중복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태양전지와 연료전지 기술개발 분야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4. 시사점

1990년대까지 한국의 총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함께 빠르게 증가하였다. 정부가 물가안정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에너지 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함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가 고착되고 에너지 소비는 경제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산업구조도 점진적이지만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완화되면서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크게 낮아졌다. 에너지원별 소비구조에서도 석유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도시가스 및 전력의 비중은 높아지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경제 및 에너지 시장 환경의 변화로 정부의 에너지 관련 장기계획도 과거 안정적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변하고 환경과 안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에너지 정책에 복지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안정적 전력공급이 중요하지만

수요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 부문의 재정은 1990년대 후반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되고 2000년대 들어서는 전력산업 기반기금이 설치되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재정수입이 증가하여 에특회계 세입은 2010년대 들어서는 5조 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전력기금 수입은 빠르게 증가하여 2016년에는 4조 원을 초과하였다. 반면 재정투자 규모는 에특회계의 경우 2010년 3조8천억 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전력기금의 경우도 증가세가 둔화되어 2016년 사업비 지출은 에특회계와 전력기금을 합하여 4조 원에도 못 미치고 있다.

에특회계와 전력기금 사업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에너지자립 기반을 구축한다는 명분하에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국내외 유전개발에 대한 투자는 2010년 1조2,556억 원까지 증가하였으나 사업성과가 부진하여 2016년에는 300억 원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이처럼 특정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가 급변을 보이는 것은 사업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정치적인 고려가 우선되고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너지 분야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의 대부분이 단순한 양적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이어서 환류(feedback)를 통한 개선도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재정의 에너지산업 및 경제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부문 계획과 재정투자 계획 간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에너지기본계획이나 전력수

37)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전력산업기반기금), p.256, 2015.12



급기본계획은 장기 에너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소요 규모나 조달계획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행 가능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전력 수요관리 사업이 대표적이다. 목표에 비해 실제로 계획된 예산이 크게 부족하여 무리한 목표설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재정의 주요 기능인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경제성장과 안정에 대한 효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낮다.

세입이 세출을 크게 초과하는 불균형의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세입은 증가하는데 세출이 축소되면서 발생한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이 도입되고 성과가 미흡하여 예산이 크게 삭감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세입세출의 불균형은 우선 세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축소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세입 목적 및 규모에 상응하는 세출항목을 발굴하고, 에너지 및 자원 부문 정책수요에 따라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세입부문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에트회계의 경우 모든 에너지원에 걸쳐 다양한 사업에 세출이 집행되고 있으나 세입은 특정 에너지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에만 수입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 발전원간 공정경쟁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발전용 유연탄에도 수입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유연탄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부과할 경우 세입이 증대되지 않도록 에너지원별 부과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는 부담금 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전기요금체계의 합리적 개선,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구조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재정의 효율성과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자율평가와 심층평가가 시행되는데 자율

평가는 사업 해당부처가 실시하고 결과를 기획재정부가 검토한다. 에너지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율평가를 담당하는데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과지표의 문제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이 존재한다. 일부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해 평가가 진행되기도 하는데 대부분 다른 사업과는 독립적으로 시행된다. 그런데 에너지 분야의 사업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도 이러한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에너지 분야 정책의 전반을 검토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와는 별도로 모든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시 사업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물론 개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지표 개발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재정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정사업에 대해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문제점과 원인을 정확히 찾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사업에 반영해야 함은 물론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으로 에트회계와 전력기금 재정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재정이 필요한 많은 부분이 시장기능이 취약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시장실패가 있는 경우 정부는 적절한 개입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국민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이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경우 자원배분의 왜곡을 통해 국민경제에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현재 에너지재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지만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에너지 분야에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 저가의 에너지가격 정책은 효율개선 투자를 유도하기보다는 에너지 소비를 조장하



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효율개선 투자를 재정 투입을 통해 추진하는 모순된 정책을 시행하였다. 시장 기능을 강화하였다면 이러한 비효율적인 재정 투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 재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시도에 앞서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한 문제를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2015.10
- _____, “2017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2016.10
- _____, “대한민국 재정 2016,” 2016
- 기획재정부, “2015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012~2014 회계년도 평가),” 2015
- 김병선,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6.10
- 박광수 외,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 : 에너지자원분야 보고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산업분과위원회, 2014.10
- _____, “재정제도 및 재정운용 시스템의 개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12-15, 2012.12
-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일반재정),” 2014.5
- _____, “201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일반재정),” 2015.6
- _____,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

- 설명자료(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에너지신산업정책단),” 2016.12,
- _____,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전력산업기반기금),” 각년도
- _____,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2014.1
- _____,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 2015.7
- 양익석 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제도 개선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3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각호
- 우암닷컴, “에너지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성과평가 개선방안 연구,” 2007.12
- 정준환 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효율적 운용에 대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3
- 최봉석 외, “발전소·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군 심층평가,”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1
- 최성호 외 2인, “에너지원별 재원배분의 현황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2014.7
- 한국석유공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실적 현황,” 2017.4
- ### 〈웹사이트〉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info/support_info.do
- 재정성과평가센터, <http://cpem.kipf.re.kr/cpem/cpeminfo04.aspx>(2017.9.12.)
-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사업안내>사업비계획/실적 http://www.etep.or.kr/home/busi_info/result/pResultView.jsp
-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 <http://www.koref.or.kr/energy/welfare/welfare.asp?FareNumb=02>